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8고단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8고단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협박

피고인 A

검사 김동희(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16.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0. 11. 21:40경부터 2017. 10. 11. 22:12경까지 C 대화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오빠랑 만나서 섹스해 줄 수 있니, 남친이랑 섹스 했다면 서, 남친이랑 섹스 잘해봐, 화이팅, 섹스해서 애기 엄마 고고, 섹스 안할꺼면 남친이랑 왜 사귐" 등의 메시지를 스마트폰 C 대화창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2.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2, 23:13경부터 23:5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 E을 대화에 초대한 후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D, 학교 어디냐고, 학교까지 찾아가게, D아 니 오늘 나 잘못 건들었어, 니 사진이랑 니 남친이랑 사진 캡쳐 했으니까, 복사해서 인터넷 올려야겠다, 섹스 하는 놈들아, 내가 학교 어떻게 찾아서 니네 둘이 헤어지게 만들께, 니네 뒤졌어, 니 여자친구 뒷조사해서 밤에 산으로 내려가서 죽여줄게" 등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스마트폰 휴대전화 C 대화창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1. 내사보고(C 메시지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C 메신져로 협박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파사 최다은